

서울특별시

훈령



우100 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법무 11180-12/2

시행일자 1993.7.27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회급		시	장
보존	준영구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담당관			
법제계장			
기안	김숙자		협조

제목 훈령발령

1. 사회11270-8726(93.7.15)호와 관련입니다.
2. 서울특별시재해구호사업기금관리규정폐지폐지규정을 별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훈령안 1부. 끝.

훈령 제 774 호

(제 2 안)

수신 공보관 (공보1담당관)

제목 시보게재

서울특별시재해구호사업기금관리규정폐지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774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기획관리실장 전결)

(제 3 안)

수신 사회과장

제목 훈령 발령 통보

1. 사회11270-8726(93.7.15)호와 관련임.
2. 서울특별시재해구호사업기금관리규정폐지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774 호(생략). 끝.

법무담당관

서울특별시 제예구오사업기금관리규정제거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 93 년 7 월 30 일

서울특별시 장 9 8

인

서울특별시훈령 제22호

서울특별시재해구호사업기금관리규정폐지규정

서울특별시재해구호사업기금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